

2023년 밀리언클럽(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) 경쟁력강화 지원 기업 모집 공고

◆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3년 밀리언클럽 신규 회원사의 성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『2023 밀리언클럽 경쟁력강화 지원』에 참여할 창업 기업을 모집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
부산경제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밀리언클럽 경쟁력강화 지원
- 사업목적 : 창업기업의 사업화추진과 아이템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촉진 지원
- 사업기간 : 2023. 5. ~ 12.
- 모집규모 : 20개사
- 모집기간 : 2023. 5. 12.(금) ~ 5. 22.(월) 18:00
- 지원대상 : 2023년 밀리언클럽 신규 회원사
- 사업내용 : 지식재산권 취득 및 등록, 홍보비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

2 세부 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2023년에 선정된 밀리언클럽 인증 회원사 중
- 지원내용 :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, 성능개선 등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무형 자산 취득비, 시험인증비, 기술이전비, 광고홍보비,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 사업화자금 지원
- 지원조건 : 지원금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수행 완료시 지원
- 지원한도 : 기업당 3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> 자부담금 20%이상 필수*

< 사업비 구성(안) >

총 사업비(A+B) 공급가액 해당(부가세제외)	지원금(A)	자부담금(B) (현금)
100%	80% 이하	20% 이상
(예시) 3,750,000원	3,000,000원	750,000원

- * 자부담금 : 지원금을 제외한 창업자 부담금으로 전체금액 대비 자부담율이 20% 이상이 되어야함.
사업화자금 지급시 전체금액 대비 자부담금 확인 예정
- ** 지원금 사용기간 및 청구기간은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되며, 사업 기간 내 자금 소진이 이루어져야 함.(지원금 사용기간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)

○ 지원항목

연번	항 목	내 용
1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-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-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-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 - 지원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
2	시험인증비	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·시스템·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*인증완료 결과물(시험분석결과서, 인증서 등)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는 건에 한하여 신청
3	기술이전비	창업기업의 제품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 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
4	광고선전비 ※ 경쟁력강화기업 지원항목	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* 온라인 및 SNS 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 이용 불가, 자체 집행만 지원 가능하며 협약기간 내 홍보건만 지원가능
5	R&D 계획 및 투자 유치 역량강화지원	R&D 계획서 및 IR피칭 자료 코칭, 피칭 스킬 업그레이드를 위한 통합지원
6	기타	그 외 기타 기업의 사업화 및 사업고도화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※ 진흥원의 사전승인 필요

3 신청자격

- 신청자격 : 신규 회원사 중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획을 보유하고 기간 내 완료 가능한 기업 중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신청제외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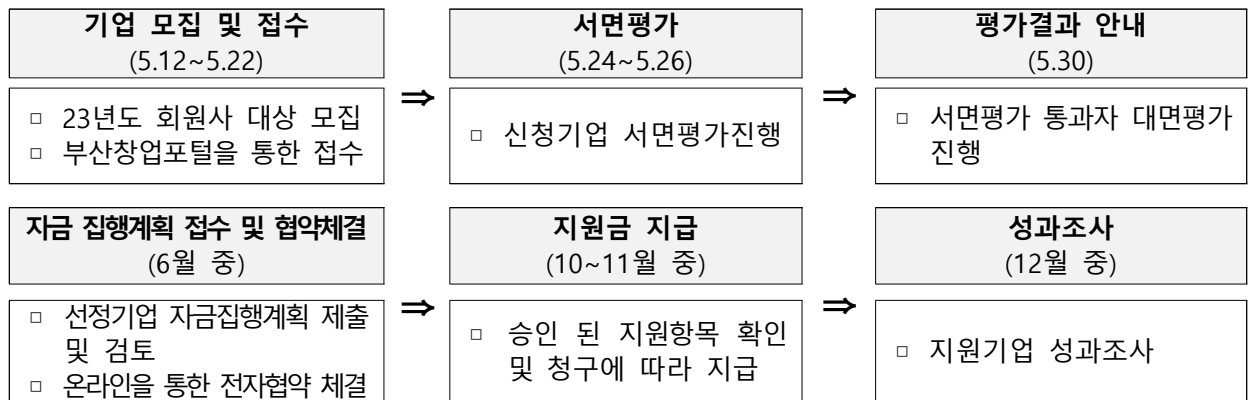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- ③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
- ④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63411
2	무도유흥주점업	634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- ⑤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

* 상기 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3. 5. 12.(금) ~ 5. 22.(월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부산창업포털(<http://busanstartup.kr>)을 통한 신청
- 제출서류
 - ① [신청서1]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, 신뢰서약서 및 동의서
 - ② [신청서2] 기업정보 엑셀파일 ➡ **총 2개 파일을 제출**

5 평가방법
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 선발(필요시 대면평가 진행)
< 평가 항목(안) >

평가항목	세부내용
사업지원 필요성	제품(서비스)의 특성 및 차별성, 시장동향, 개발 전략 및 방법
지원금 집행계획	지원금 집행계획 및 지원사업 추진일정의 타당성
기대효과	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
팀 구성	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

6 선정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*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* 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(완제품 제작 등)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본 사업 외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창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됨
-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됨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, 선정 취소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가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금과 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되게 사용 또는 집행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,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되게 지원금 사용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

7 문의처

기관명	부서명	연락처
(재)부산경제진흥원	창업지원단	장슬기 주임 051-600-1866 ☒ jsg@bepa.kr